

인장관리 규정

2021. 12. 06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직인이라 함은 체육회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직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.

제3조(종류) ①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 직인
 2. 실인
 3. 계인
-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가지며, 전자문서 시스템 상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각 호 외에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내용 및 규격) ① 인장의 내용은 직위의 명칭으로 하고 자체는 한글로 한다.

- ② 회장 직인은 “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회 장” 이라고 가로로 새긴다.
- ③ 인장의 형상은 [별표 1]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크기는 사각형의 길이 지름이 3cm 이내로 하고 실인은 원 지름이 각 2cm 이내로 한다. 다만, 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인장의 등록) ① 인장을 제작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그 형상 규격 또는 내용에 관하여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인장은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직인 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사업1팀에서 관장한다.
- ③ 회원단체는 체육회 직인등록대장[별지 제1호 서식]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관 및 사용) ① 인장은 사업1팀에서 보관하되,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② 인장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자가 인장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.
- ③ 회장 직인을 사용하는 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근거하여 날인하고, 별도 회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직인 사용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7조(폐기 및 재조각) ① 인장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에 의한 인장을 체육회 직인등록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각 또는 폐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인 대장은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칙) 체육회 회원단체의 인장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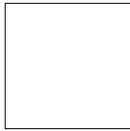
부 칙(2021. 12. 06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인장의 종류

1. 직인



가로 3cm
세로 3cm

2. 실인



세로 1.8cm
가로 1.8cm

3. 계인



가로 1.5cm
세로 3.6cm

[별지 제1호 서식]

직 인 대 장

인 영

등인일자	년 월 일	검인		
각인일자	년 월 일	규격	가로 cm, 세로 cm	
회원단체 각인자 · 주소				
재료		인장의 종류		
적요				
보관책임자		비고		

(26.5cm×20cm)

[별지 제2호 서식]

직인 사용 기록부

년월일	문서번호	발신	수신	제목	부수	담당자